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6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3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서천호 · 김용태
김태규 · 김승수 · 김정재
김기현 · 김성원 · 김상훈
김희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보육, 교육, 의료, 주거·교통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.

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,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(안 제28조의2 신설).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8조의2(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사업장을 신설·증설하는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8조의2(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사업장을 신설·증설하는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